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7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임광현 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7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0. 24.
- (3) 회 부 일 : 2024. 10. 25.

나. 제안이유

2020년에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에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체계임.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국내 증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행을 재차 유예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과세당국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稅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를 국세청 차원

에서 취합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등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개인에게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안 제164조의6 신설).

나. 금융회사등은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1항).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2항).

라. 금융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내역을 반기마다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3항).

마.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 및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74조의2제4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임광현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등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4조의6 신설)</u>
☐ <u>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2)</u>	☐ <u>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u>
○ 적용대상: <u>금융투자업자</u> ○ 자료제출의무: 다음 자료를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u>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u> - <u>장외매매거래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u> - <u>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u>	○ 적용대상: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u> ○ 자료제출의무: - <u>안 제164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u> - <u>집합투자기구 투자내역: 투자 또는 환매·양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u> ○ <u>보유내역 제출의무: 안 제164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u> ○ <u>자료보관의무: 해당자료는 5년간 보관</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임광현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78)

□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유내역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에게 금융회사등과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음.¹⁾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의 제출의무는 과세당국이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세액 또는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소득의 탈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되었음.²⁾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의무와 보관의무 등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과세당국

1)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① 금융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4) 검토보고, 2020. 11.

이 개인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도입될 향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투자자와 관련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 상장주식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현재 대주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상품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에 따라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1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또한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2016년 1월 1일에 맞춰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³⁾ 등에 비추어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에 맞추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둘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금융소지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7698) 검토보고, 2013. 11.

셋째,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거나 제도가 폐지될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개정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